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134-01

농업 분야 조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 농업 분야 조세지출 현황 및 평가 -

[연구기관: 한국세무학회]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분야 조세제도개편방안 연구-농업분야 조세지출 현황 및 평가」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사)한국세무학회

책임연구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최보람 (호서대학교)

차 례

I. 연구의 필요성	1
II.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2
III.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현황	6
IV.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13
V.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화방안	20
참고문헌	29
[별첨]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30

I.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규모는 2012년 29조원 정도로 잠정 추계되고 있으며 2013년도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금액은 GDP 대비 2% 정도 수준이며 국세수입 대비로는 12%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유형별로 파악하면 중소기업,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57%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조세지출의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조세지출 중 농업 분야에 대한 지출은 금액으로 5조원 정도이며 비중으로 보면 전체 조세지출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분야 지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큼
 - 현재 총 60개 항목에 걸쳐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농민에 대한 면세유 지원,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각각 1조 정도로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지출항목임.

- 이렇게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출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함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지출 축소를 예고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에 대해서 엄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조세지출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다소 방만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농업분야 조세지원 방안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II.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1. 새 정부의 정책방향

- 2013.6.26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짐작할 수 있음

- 새 정부는 복지지출 등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자원배분 효율성과 과세형평성 개선이라는 취지하에서 조세지출 항목들을 대규모로 정비하고자 하고 있음.
 - 2013년 3조3천억 등 2015년까지 총 5조6천억원의 조세지출 항목들을 정비할 계획임.

- 현재 30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 중 농업 분야의 비중은 매우 큰 실정임.
 - 농림어업분야는 5조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지출 대비 17.6%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규모는 31%에 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부처별로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조세지출 규모가 4조5천억원으로서 총 지출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6.3%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큰 규모임.

- 조세지출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
 - 일몰시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으로써 나타나는 항구화 및 기득권화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
 -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
 -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함.

- 총 조세지출의 92%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중 특히 소득세가 45.3%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세목에만 조세지출이 편중되고 있음.
- 조세지출의 정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대로 기존제도들을 정비함.
 - 새로운 제도 신설은 최대한 억제함.
 - 존속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계부터 검토하여 정비함.
 -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함.
- 농업분야에 대한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축소
 - 농협 등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
 -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사업으로 대체함.
 - 면세유 제도, 농업용 기자재 등 중간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 혹은 재설계

2. 기타의 선행연구

-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보남·김현동, 2010)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목장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사실상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이연효과 뿐 세액감면 효과가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
 -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대한 요건을 과세실익이 없는 경우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정연식, 2011)
 - 자경농지 감면규정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도록 함.
 - 농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짧은 대토감면의 자경기간 요건을 늘리고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조정이 필요
-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장태평 · 정규언 · 서희열, 2011)
 - 농산업 경영체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 창업농 또는 귀농인에게 취 · 등록세를 감면하고, 영농조합의 회사전환이나 합병 등의 지원 필요
 - 유통비에 대한 부가가치에 등의 감면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일몰기한 연장필요
-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서희열 · 정규언, 2006)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소득세와 일치시킴.
 -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킴.
-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김완석 · 심태섭, 2012)
 -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단일비례세율을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조로 개선할 필요
 - 협동조합에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용고배당금에 대해서 전액 손금산입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이 바람직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훈 · 정지선, 2009)
 - 소득세법상 농지의 교환과 분합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경작의 필요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대토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부채지주에 대한 제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함.

□ 농업환경변화와 조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양종관, 2005)

-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이라는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
-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유사하므로 동일한 과세혜택을 지원. 다만,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개선될 필요
- 농업 투입재에 대한 면세, 영세율 및 환급 등의 조세지원제도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
- 유류에 대한 세제지원은 교통세나 특별소비세는 감면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를 유지 및 보완하여 농지의 상속, 증여, 양도, 교환 및 분합 등 거래관련 조세가 장애로 작용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를 유지, 보완할 필요

□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김미복 · 김수석, 2011)

-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전반적인 조세지원을 검토하고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제시된 개선방안은 첫째, 조세지원 중심에서 소득세 과세 후 제도상 혜택으로 전환, 둘째, 부가가치세 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셋째, 농업관련 재산세제의 정비, 넷째, 농업관련 법인세제의 정비, 다섯째,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 특히 농업분야 부가가치세의 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과 농업소득세 재도입과 관련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예상 효과를 분석

III. 농업분야 조세지출 현황

1. 조세지출규모 현황

- 현재 농업분야 조세지출 항목은 총 60개이며 이중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34개 항목에 총액은 5조5억원임(<표1>참조).
- 총 60개 항목 중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항목이 26개로서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으로써 정책효과 등을 판단할 수 없음.
 - 농업소득세 폐지로 인한 실제 조세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없음.

〈표 1〉 농업분야 조세지출 규모

(단위 : 억원)

항목수	총금액	평균금액**	최대금액	최소금액
60(34)*	50,005	1,471	11,870	3

* 괄호 안은 규모 추정이 가능한 항목수임.

** 규모 추정이 가능한 항목 당 평균 금액임.

- 지출규모 추정이 가능한 항목별 지출규모를 보자면 1조원 이상이 3개 항목이며 1천억원 이상은 4개 항목임.

〈표 2〉 지출 규모별 분포

	1조원 이상	1천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합계
항목수	3	4	15	12	34
총액(억원)	33,184	10,627	5,822	372	50,005
평균(억원)	11,061	2,657	388	31	1,471

-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항목별 지출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규모 순으로 상위 10개에 속하는 지출항목들이 총지출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표3>참조).
 - 면세유 공급,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3대 항목이 금액 면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상당수 항목들이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거나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출인 것으로 보임.

<표 3> 농업분야 지출규모 상위 10대 조세지출 항목

(단위 : 억원)

순위	내용	금액	비중
1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870	0.24
2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10,911	0.22
3	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면제	10,403	0.21
4	농협 등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4,991	0.10
5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2,322	0.05
6	농협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1,883	0.04
7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431	0.03
8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797	0.02
9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784	0.02
10	농지 대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766	0.02
	합계	46,158	0.92

- 일몰시한별로 구분하면 일몰시한 없이 계속되는 항목이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항목이 그 다음임(<표4>참조).

〈표 4〉 일몰시한별 농업분야 조세지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기타*	계
추정가능	3	12	10	9	0	34
추정곤란	0	4	5	16	1	26
총액	1,418	15,111	14,514	18,962	0	50,005
평균	473	1,259	1,451	2,107		1,471

* 2010년 폐지된 농업소득세임.

2. 세목별 현황

국세 vs. 지방세

- 조세지출의 규모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면 국세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에 그치고 있음(<표5>참조).
 - 그러나 항목수로는 국세 35개, 지방세 25개 항목으로 거의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음. 이를 통해서 지방세는 금액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규모가 작은 조세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여 조세지출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국세는 35개 항목 중 13개 항목의 조세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비중은 37%이지만 지방세는 25개 항목 중 13개 항목의 조세지출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비중이 52%에 달하고 있음.

소득세 vs. 부가가치세

- 농업분야의 조세지출을 세목별로 구분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득세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조세지출에서 금액 비중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임.

- 조세지출의 규모면에서 면세유의 경우까지 부가가치세에 합산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60%에 달할 수 있음.

〈표 5〉 세목별 농업분야 조세지출 기술통계

	항목수			금액		
	항목수	규모 추정가능	규모 추정곤란	총액(억원)	평균(억원)	비중
법인세	7	6	1	3,015	503	0.06
소득세	7	6	1	3,608	601	0.07
양도소득세	8	2	6	11,677	5,839	0.23
부가가치세	6	5	1	18,936	3,787	0.38
소비세*	1	1	0	10,403	10,403	0.21
기타	6	2	4	317	159	0.01
국세 계	35	22	13	47,956	2,180	0.96
취득세	14	8	6	1,172	147	0.02
등록세	3	1	2	318	318	0.01
농특세**	3	1	2	411	411	0.01
기타	5	2	3	148	74	0.00
지방세 계	25	12	13	2,049	171	0.04
총계	60	34	26	50,005	1,471	1.00

* 교통세 등과 같은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으나 편의상 국세로 분류함.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구분되어야 하나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세이므로 지방세로 구분하였음.

3. 지출대상별 현황

- 조세지출의 대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항목수로는 34개, 지출규모로는 13,240억원이고 비중으로 보면 항목별로 57%, 금액으로는 26%임(<표6> 참조).
- 특히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일반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는 11개 항목에 2,595억원에 이르고 있음(예: 비조합원이 받는 농협 등 예탁금 이

자소득 비과세 등)

-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조세지출의 대상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관련된 조세쟁송의 소지가 높음(예: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17개 항목이며 금액으로 13,413억원에 이르고 있음.
 - 농협 등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 면에서 너무 크며 중복적임(예;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와 함께 각종 채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동시에 주어짐)
 -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 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이나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농협 등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킴(예;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동일한 경쟁업체인 민간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며 각종 취득세 면제는 동일한 위치의 농수산물 유통업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

〈표6〉 지출 대상별 농업분야 조세지출 기술통계

	항목 수		지출금액(단위:억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농업인	26	0.43	36,765	0.74
농업법인	6	0.10	413	0.01
농협 등	17	0.28	10,232	0.20
기타	11	0.18	2,595	0.05
계	60	1.00	50,005	1.00

4. 정책목표별 현황

- 농업분야 조세지출을 정책목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음. 정책목표는 ①농가소득지원 ②농업경쟁력 강화 ③농촌지역활성화 ④농업 관련 단체 지원으로 구분하였음.

- 농가소득지원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말함.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대표적임(조세지출금액 1조900억원)
 - 3천만이하 농협 등 예탁금과 출자금 비과세(3,119억원),¹⁾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87억원), 농업법인 출자자 배당 비과세(191억원), 전담임대소득 비과세(205억원) 등임.

- 농업경쟁력 강화는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조세지출을 통해서 생산원가를 낮추고 산업으로서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말함.
 - 면세유 공급,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이 속하며 이들 2대 조세지출의 합계는 2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외에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305억원)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766억원) 등이 있음.

- 농촌지역 활성화는 농촌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임.
 - 여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2억)과 귀농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정 곤란) 등이 있음.

- 농업관련 단체 지원은 농협, 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 단체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이들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지원이나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임.
 - 농협 등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 및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991억원), 농협조합 등의 당기순이익 저율과세(1,883억원), 조합의 고유목적사

1) 이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과 함께 서민금융지원차원의 조세지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농협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업용 부동산 등의 취득세 면제(784억원) 등이 주요 항목임.

-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의 조세지출이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농가소득 지원(29%), 농업관련 단체 지원(21%) 순서로 비중이 큼.

〈표 7〉 농업분야의 조세지출의 정책목표별 구분

		농가소득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	농업관련 단체 지원	계
항목수	총 계	14	19	7	20	60
	추정가능	7	8	2	17	34
	추정곤란	7	11	5	3	26
금액 (억원)	총액	14,519	24,912	136	10,438	50,005
	평균	2,074	3,114	68	614	1,471
	비중	0.29	0.50	0.00	0.21	1.00

IV.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 농업분야의 조세지출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유형별 평가와 세부항목별 평가를 병행하고자 함.
 - 이러한 평가는 연구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나 자료미비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1. 유형별 평가

(1) 평가의 목적

- 유형별 평가에서는 농업분야 조세지출을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유형에 속한 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함.

(2) 유형별 평가

가. 조세지출 규모별 평가

- 대규모 vs. 소규모 조세지출
 - 조세지출 규모와 조세지출의 정책효과와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세지출 규모가 작을수록 조세지출의 수혜자 수가 적으며 동시에 정책효과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조세지출규모가 큰 항목이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분명하고 중요도

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소규모 조세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100억원을 들 수 있지만 농업법인 지원, 농민소득지원 등과 같이 정책목표가 명백한 항목들은 지출규모가 무관하게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나. 조세지출 세목별 평가

□ 지방세 vs. 국세 관련 조세지출

- 조세지출을 감면 대상인 세목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와 달리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농촌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세출지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은 금액 면에서도 소액이면서 지출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보다는 국세 감면이 보다 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되지만 그 논리적 근거는 지방세와 동일하므로 지방세로 구분하고자 함.

□ 소득세 vs. 소비세 관련 조세지출

- 소득세는 누진적 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농민과 같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소득세와 상반되는 역진적 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비세는 농업에 특유하게 필수적인 물품을 지정함으로써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적음(면세유 등과 같이 일상적인 물품은 예외가 됨).

-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는 소득세 보다 소비세 관련 조세지출이 더욱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앞선 <표5>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은 총액 대비 31%이며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 감면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은 총액 대비 59%에 달하고 있어서 소비세 감면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조세지출 대상별 평가

□ 농업인 vs. 비농업인에 대한 조세지출

- 농업관련 조세지출 중에는 조세지출 대상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관련 단체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비농업인에 대한 조세지출도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거나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업인 혹은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지출이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보다는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비농업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앞선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항목에 2,595 억원에 이르고 있음.

□ 농업인 vs.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지출

- 농협이나 농어촌공사 등과 같은 농업관련 단체들에 대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
-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들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효과를 갖는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정책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앞선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지출은 17개 항목에 10,232억원에 이르고 있음.

라. 조세지출 정책 목표 별 평가

□ 농가소득 지원 vs. 농업경쟁력 강화

- 농업분야 조세지출의 정책목표는 크게 농가소득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구분할 수 있음(<표7> 참조).
- 두가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농가소득 지원은 통상적인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가 경합할 경우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유형별 평가 결과

-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고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중요성을 판단하고자 함.

평가유형	배점
조세지출규모	지출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점, 그 외의 경우에는 0점
조세지출의 세목	국세인 경우 1점, 국세이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면 2점, 지방세목인 경우에는 0점.
조세지출의 대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2점, 농협 등 농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1점, 기타의 경우에는 0점
조세지출의 정책 목표	농업경쟁력 강화의 경우에는 2점, 농가소득 지원인 경우에는 1점, 기타의 경우에는 0점
합계	7점 만점

- 평점별 평가결과는 아래의 <표8>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음.

- 평점 4점 이상으로서 보통 이상의 평점을 받은 항목은 26개 항목으로 전체 항목에 대해 43%였으며 조세지출규모로는 42,517억원으로서 전체 규모 대비 85%에 해당함.
- 지출규모가 클수록 평점이 높아지며 국세에 대해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평점을 받은 항목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규모 대비로는 85%를 차지하는 있음을 알 수 있음.

〈표8〉 유형별 평가 결과 요약

유형별 평점	항목수	비중	금액	비중
0	2	0.03	0	0.00
1	11	0.18	154	0.00
2	8	0.13	1,861	0.04
3	13	0.22	5,473	0.11
4	13	0.22	5,913	0.12
5	8	0.13	11,829	0.24
6	2	0.03	1,071	0.02
7	3	0.05	23,704	0.47
계	60	1.00	50,005	1.00

- 3개 항목은 모든 항목에 대해 만점을 받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23,704억원으로 전체 47%를 차지함. 또한 2개 항목은 6점을 획득하였고 이들의 조세지출 규모는 1,071억 원으로서 전체 지출규모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음.

〈표9〉 유형별 평가 상위 5개 항목

평점	항목	지출규모
7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431
7	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10,403
7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870
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305
6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766

2. 세부 항목별 평가

(1)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 유형별 평가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60개 조세지출 항목별로 개별 평가를 수행하였음.
 -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 관련 소득세 면제와 농업인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시 취득세 면제 관련 항목은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여 평가대상 조세지출 항목은 사실상 2개 증가함.
 - 농업소득세는 폐지되었으므로 조세지출로 구분되어 있으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평가대상 조세지출 항목은 1개 감소함.
 - 따라서 총 평가대상항목은 60개 + 2개 - 1개 =61개임.
- 개별 평가는 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한 7개 항목에 기타 항목 1개를 추가하여 총 8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평가함.
 - 평가항목 1 :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평가항목 2 :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평가항목 3 :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평가항목 4 :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평가항목 5 :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 6 :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평가항목 7 :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평가항목 8: 기타 감점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평가 결과 요약)

- 총 61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로 각 항목별로 보통 이상의 평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항목 중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조세지출 규모이며 다음으로는 선행연구의 존재, 조세지출의 효과성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조세지출대상의 적절성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음.

2) 세부평가결과는 부록을 참조할 것.

V.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화 방안

-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농업분야 조세지출 항목들을 체계화함에 있어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단기 방안은 1년 이내 시행이 가능한 방안이며 중장기 방안은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임.

1. 단기 방안

(1) 농업분야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중요도 설정

- 현재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거나 규모 면에서 소액으로서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조세지출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60개에 이르는 농업분야 조세지출 항목들 중 정책적 효과에 따른 정책적 중요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중요도에 따라서 향후 조세지원 확대나 축소에 대비할 수 있음.
 - 중요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혹은 감축 내지는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유형별 평가점수와 세부항목별 평가점수를 결합하여 농업분야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른 평가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3대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

- 앞선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분야 조세지출 중 1조원이상의 지출규모를 갖고 있는 것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1,870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10,911억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면제(10,403억원)로서 이들 3개 항목은 전체 조세지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3대 항목은 조세지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 3대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체계화 전략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3대 조세지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석유류 소비세 면제는 농업경쟁력 강화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류 소비세 면제는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2022년까지 존속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이들 두 항목은 당분간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세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세지출 대상자인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1조원이 넘는 거액이면서 지출대상자 구분이 모호하여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또한 농지를 처분하여 농업을 떠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임.
 -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실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조세연구원 평가결과와의 비교

-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농업분야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총 25개 항목 42,774억원의 조세지출에 대해서 보통 이하의 평점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우선 정비 대상임을 공표하였음.
- 보통 이하의 평점(미흡 혹은 보통)을 받은 25개 항목은 60개 항목 대비 42%이며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규모는 총 42,774억원으로서 이는 농업분야 전체 조세지출의 8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농업분야의 조세지출을 거의 폐지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미흡 평점을 받은 항목은 총 6개 항목이고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15,052 억원이며 보통 평점을 받은 항목은 총 19개 항목이고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27,722억원에 이르고 있음(<표11> 참조).
- 평점의 사유로는 조세지출규모가 소액인 경우 5건, 비농업인에 대한 지출 2건, 간접세로서 소득지원효과 미미가 2건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지출 1건이며 나머지 14건의 사유는 분명하지 않음(<표12> 참조)

〈표11〉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연구원 평가결과의 요약

평가결과	항목수				지출규모(억원)	
	규모추정 가능	규모추정 곤란	계	항목대비 비중	금액	금액대비 비중
미흡	6	0	6	0.10	15,052	0.30
보통	14	5	19	0.32	27,722	0.55
계	20	5	25	0.42	42,774	0.86

〈표12〉 조세연구원 평가결과의 사유별 구분

평가결과	소액	비농업인	간접세	고소득층	불명
미흡	1	2	1	1	1
보통	4	1	1	0	13
계	5	3	2	1	14

- 조세연구원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농업분야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42%, 농업분야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86%를 보통 이하로 평가함으로써 단기간에 거액의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데 비하여 항목별 정비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움.
 - 평가 사유별로 구분하자면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예: 소액 조세지출 중 일부만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으며 간접세 감면 중 일부만이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음).
 -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명시된 3개 항목(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면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도 정비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 원칙 면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정비우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표13>참조).
- ①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사항
 - ②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지출들
 - ③ 농업법인 지원이나 농민소득지원에 필요한 지출들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에 포함된 3개 항목은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농업생산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의 투입물(기자재, 인건비) 등에 대한 세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대행용역, 수입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실행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책은 필요할 것임.
- 농가소득지원은 비록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우선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목돈마련저축 비과세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법인, 단위농협 등과 같이 영세한 소규모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계속 되는 것이 바람직함.

〈표13〉 조세연구원 평가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들

항목	규모	사유
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면제	10,403	FTA 사후대책 농업생산비용 절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431	농업생산비용 절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870	FTA 사후 대책 농업생산비용 절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305	농업경쟁력 강화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766	농업경쟁력 강화
영농·농업회사법인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농업생산비용 절감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치세 면제	74	농업생산비용 절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비과세	87	농가소득지원
농어가 부업소득 및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FTA 사후 대책
영농·영어상속인의 상속세 추가공제	추정곤란	농업경쟁력 강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99	농업경쟁력 강화
농협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1,883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3	농업경쟁력 강화

2. 중장기적인 체계화 방안

(1) 체계화 방향 설정

-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장기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오히려 쇠퇴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나 공평성 훼손 등의 문제점도 갖고 있음.
 - 이론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주거, 교육, 의료환경 등을 개선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농가 소득 지원보다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우선시 하는 정책목표의 구현
 - 농가 소득 지원 목표는 국가 전체적인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음.
 -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소득지원을 해야 하는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에 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농민 중에서도 일부 고소득층 농민이 있게 되며 이런 경우 고소득층 농민과 일반농민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됨.
 - 그러나 농업분야는 국가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필수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명분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음.
 - 따라서 두 가지 정책 목표 중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를 통한 소득지원
-

- 현재 농업분야의 조세지출은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정책효과를 검증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임.
 - 농업소득의 파악을 위해서는 농업인을 일반적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무신고에 따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농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비율 보전할 수 있음(근로소득 장려세제와 유사함).
- 세제 단순화 및 체계화
- 농업분야 조세지출과 관련된 세제를 정비하여 보다 단순화하고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체계화 방안

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세제 구축

- 현재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조항들을 하나의 조문을 묶어서 정비하고자 함.
- 핵심은 농업의 투입물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것임.
 - 농업의 생산비용이 낮아지므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어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업인력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인구를 확보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농업에 관한 모든 투입물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조문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임.
- 농업인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영세울 사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음.

- 현재 농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입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생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도 없음.
- 농업인을 영세율 사업자로 본다면 투입물에 대해 부담한 모든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율이 0이므로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을 것임.
- 농업인이 영세율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됨.
 -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세율 사업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세한 농업인들에게는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나. 종합적인 소득지원세제 구축

-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세제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은 기후의 영향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고수익, 고위험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갑작스러운 손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지원세제를 구축함.
 - 과거 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손실이 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수익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음.
 - 영세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과거 소득세 납부실적과 무관하게 손실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에 대한 세무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앞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기장과 세무신고가 전제되어야 함.
- 여러 조세지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농민들의 기장과 적절한 세무신고는 필수적인 요소가 됨.
-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기장이나 세무신고에 대한 다양한 세무서비스 지원과 세제상 유인제도가 필요할 것임.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농민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납부를 대리한 경우 이들에 대한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농민들이 스스로 기장하고 세무신고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강창용, 2005,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R6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보남·김현동, 2010,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215-257.

김완석·심태섭, 2012,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12(2): 7-40.

김학수·박노옥, 2013,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연구원.

김홍상, 2011, 농업, 농촌 여건 변화 대비 농지은행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훈·정지선, 2009,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6(4): 149-275.

서희열·정규언, 2006,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7(1): 71-88.

양종관, 2005, 농업환경변화와 조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405-434.

장태평·정규언·서희열, 2011,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28(4): 299-325.

정연식, 201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2(2): 281-315.

[별첨]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1.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 5조

- 조세지출규모 : 797억(2012년 농협 실적)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또한,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실비정산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조합원 소득 증대 및 농협의 자기자본 확충목적의 정책 목표가 명확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민 소득 증대 목적으로는 다른 사업과 중복될 수 있겠지만 출자금의 특정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실제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적절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인원이 너무 많아 1인당 조세지원액이 32천원에 불과하고 사업이용고 배당의 경우는 영세농민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나는 정책일 수 있음(지혁농협의 수익 증대가 농협의판매 물품이나 예대마진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 농민이 비싼 값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배당을 출자금을 납입할 여력이 있는 농민이 향유할 가능성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당 32,596원의 조세지출이 조합원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오히려 전체 세수일실액(797억)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8	기타	

2.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 3조

○ 조세지출규모 : 2322억(2012년 농협 실적)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농민·어민 기타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는 농민 소득지원이 아닌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임. 전체 농협 예탁금 규모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분이 81.1%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금융기관 통산 적용되는 세금우대한도와 중복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준조합원의 경우 일반은행의 세금우대와 농협 등의 비과세 제도를 모두 이용하여 이자소득 저율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을 포함하여 준조합원까지 조세지출의 혜택을 향유하고 간접적으로는 기관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항목이므로 대상자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조합원의 자금을 통한 기관의 수익성 증대 효과가 조합원(농민)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한도가 농협 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 금고를 합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모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평가항목		평가결과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조세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농협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각 농촌의 지역경제가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영업적 우위도 있으므로 자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8	기타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 조세지출규모 : 87억(2012 농협중앙회 실적)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농민의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촌 소득 증가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및 장려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일반농민(1ha~2ha 사이 농지보유, 일정규모이하 가축보유), 저소득농민(1ha 이하 농지 보유, 일정규모 이하 양축가)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요건이 양적 요건만 존재함. 예를 들어 농지면적에 대한 요건만 존재하고 농지의 전년 기준시가 등 금액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 농지와 도시 근접 농지를 보유한 농민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월10만원(저소득), 12만원(일반)의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10%금리(장려금리 포함)를 고려할 때 1년간 이자소득비과세 규모가 2만원(120*10%*0.154) 수준의 규모이나 장기저축(3년, 5년)이기 때문에 저소득농어촌의

평가항목		평가결과
		저축 지속력에 의문이 있음 • 또한 조세지출의 규모가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민 소득 증대에 효과적인 정책임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금융 포커스: 저소득층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2012, 연태훈, 주간금융브리프)-기관연구
8	기타	

4. 농어가 부업소득 및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

가. 농어가 부업소득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다목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가가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진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축산업, 전통차, 전통주 등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 존재함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대부분의 농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업이 영위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다고 판단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축산농가의 경우 부업의 규모가 그 축종의 재산 가액을 고려하면 매우 큰 상황이어서 부업 비과세라는 정책적 타당성 대비 규모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	• 농민 소득 증가라는 정책 목적에는 조세지출이 효과적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인가?	일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가?	•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 와인이나 맥주 등에 대한 유사한 조세지원 사례가 있음.
8	기타	

나. 전통주 제조소득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라목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수도권외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가가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진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해당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전통주)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민이 주류제조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수취할 경우 적절한 대상자일 수 있으나 모두 농민에게 조세지출이 귀속되는 것은 아님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	• 규모가 추정곤란하며 비과세한도로 인해 소득이 더 높

평가항목		평가결과
	하게 하고 있는가?	아지는 경우에도 비과세한도 이하로 소득 신고할 가능성도 존재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부업의 일종이어서 소득 증가보다 사업 리스크가 더 높을 수도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 와인이나 맥주 등에 대한 유사한 조세지원 사례가 있음.
8	기타	

5.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가목

○ 조세지출규모 : 205억(2012년 실적)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농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그 조세지출의 모든 대상은 아님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과 토지소유인과의 합리적인 임차대가 지급시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비과세가 사회적초과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비과세가 정책목표에 적합한 지, 조세지출산정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소득 비과세만큼 농지임차료 완화에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 농지소유자의 재산 규모가 반영되지 않음. 오히려 농지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후 일정 금액 이하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6. 영농조합법인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191억원 추정(2012년)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고소득 조합원의 수혜가능성이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업 소득 외 배당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세지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조세지출 규모라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분야 경쟁력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개선방안(2010) 용역보고서에 의거함. 해외사례 존재
8	기타	

7. 임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마목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임업 경쟁력 강화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림기간 5년 이상, 연 600만원 이하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추정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정책적으로 조림기간을 규정하고 비과세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임업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지출규모 : 10,911억원 추정(2012년)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시행령 제 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 소정의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장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토만의 특성이므로 다른 재정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가 대상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자경농의 범위가 실질적인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에서 목적인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하여 평가하기 어려움

평가항목		평가결과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로 인한 토지 양도와 합산하여 2억원의 연간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의 누적 감면한도를 두고 있으나 2011년 기준 127,615건의 면제 총세액이 1조 2,140억원의 규모여서 951,330원의 효과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연간 2억원의 한도와 큰 차이가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간의 성실경작을 장려하고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농지 양도 후 농지를 재구입하는 경우나 일정 연령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한정하는 것이 정책 수행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정연식, 2011, 세무와 회계저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박훈, 정지선, 2009) 외에도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함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많은 항목(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 1849건의 질의회신, 심판청구 등의 항목이 존재함)

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

○ 조세지출규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포함되어 있음(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를 한도로 함)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 소정의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상속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한-EU FTA 이행에 대비한 축산분야의 대책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시 양도세 감면의 정책 목적 있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과 일부 중복성이 있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축사를 양도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결과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지출의 취지와 정책 목표, 대상자와 수혜자가 적절하지만 현재 조세지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농어촌주택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농가가 단순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제도는 축산업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축사용지의 매도금액을 농, 축업에 재투자시 100% 감면을 해주고 그 외의 현금 청산의 경우는 감면율을 낮추어 지속가능한 농축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8	기타	

10.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제133조 제3항

○ 조세지출규모 : 305억(2012년)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이하 “농지 등”)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영농자녀의 수증일이 아니라 자경농민의 취득일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시 필요경비로 함.

—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분과 과세된 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또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청장년층의 신규 농업인 유도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후계자가 그 정책대상자로 조세지출의 정책 목표에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기준 1인당 약 1400만원의 조세지출 혜택이 있었음. 증여재산으로 환산하면 증여재산공제등을 고려할 때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농지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지출의 5년간 한도 1억원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어 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후계자의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 농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절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보남, 김현동, 2010, 조세연구)
8	기타	

11. 농지의 교환·분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용지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농지의 교환, 분합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지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이 있지만 교환, 분합에 대해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지 않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한 자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지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양도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 항목이므로 조세지출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그 규모가 추정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여 조세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교환이나 분합시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박훈, 정지선, 2009)
8	기타	

12.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지출규모 : 766억(2012년)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자료 계속)

□ 세부내용

-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경영활동을 위한 정책목적에 부합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8년)보다 완화된 조세지출로서 대토요건이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악용가능성도 있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3년 경작 이후 1년 이내에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3년 추가 경작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면적 비율 완화는 합리적이지만 3분의 1의 가액 요건은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일부 대상자의 악용가능성이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100% 감면을보다 일부 대토라도 일정수준의 양도세 감면이 정책 목적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	• 제도의 필요성은 높으나 정책 목표를 100% 달성하는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인가?	데에는 부족함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 (정지선,2009, 조세연구)
8	기타	

13. 농어촌주택 소유로 1세대 2주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단,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및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촌 상주 인구의 증가를 정책 목표로 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다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같이 특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타발적 또는 이농을 목적으로 한 1세대 2주택 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운영이 적절한 조세지출의 규모로 판단되나 그 규모가 추정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도 도시 지역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세지출이 농촌상주인구 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평가항목		평가결과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많은 법학자, 세무학자들이 연구하였음
8	기타	

14.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자료 계속)

□ 세부내용

○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지역 또는 고향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2003년 8월 1일부터(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함.

— 다만, 일반주택과 신규 취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 읍·면·시지역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짐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로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 농어촌 거주여부와는 차이가 있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자들이 모두 농어촌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귀농 후 다시 도시로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일정한 조세감면의 제한이 필요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어촌 주택 취득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어촌주택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서울시립대, 2012)
8	기타	

15.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농지 또는 초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농지 또는 초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농민이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지분이 총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동 금액에 대한 1일 1만분의 3의 비율의 이자상당액을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이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농업회사 양성을 위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절하지만 이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업회사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고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 조세지출이 정책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가?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개선방안(2010, 한국세무학회)
8	기타	

16.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조세지출규모 : 1조1,870억(2012년)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영세율로 적용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제도와 중복성이 있으나 동 방법이 주요 방법임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분명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업생산비 감소 목적을 지니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므로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업용 기자재 사후 환급제도와 합산하면 약 1조 5천억원의 조세지출 효과가 있으며 농업생산규모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큰 규모임. • 조세지출을 통해서 조세효과를 생산자가 누리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제도가 운영되어도 농기계사용자인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세지출의 효과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8 기타	

17.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 조세지출규모 : 1,431억(2012년)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민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나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사후환급, 면제의 방법의 제도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중복성이 존재함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분명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업생산비 감소 목적을 지니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므로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제도와 합산하면 약 1조 5천억원의 조세지출 효과가 있으며 농업생산규모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조세지출을 통해서 조세효과를 생산자가 누리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제도가 운영되어도 농기계사용자인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세지출의 효과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8	기타	

18. 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10,403억(2012 농협중앙회 실적)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다음의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 ①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민 등”이라 함)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농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하여 그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관할세무서장은 농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과

동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정하여야 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면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대상자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문제 존재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하우스 등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농기계용 면세유 외에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전체 농가(1,163천호) 대비 가구당 894천원의 조세지출 효과가 존재하고 있어 조세지출의 규모가 매우 큼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조세지출 규모가 매우 큰 데에 연동하여 이에 따른 악영향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임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8 기타	

19.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어민에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어업 법인 당 종사자수가 2011년 기준 6.9명인 상황에서 농업 노동력 부족을 방지하려는 정책 목표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 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법인에 국한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개인간의 노동력 제공 과정이 법인을 중간자로 하여 조세지출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음(농업법인의 임시근로자 수가 상용근로자의 1/3에 해당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조세지출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이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총규모가 추정곤란하고 실제 대행 용역에 얼마만큼의 법인이 농업에 기여하는 지 구분이 어려움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제도의 운영 방법이나 제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우리나라 농산업을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2011,세무학연구)
8	기타	

20.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조세지출규모 : 74억(2012 실제)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민 및 어민(이하 “농민”이라 함)이 국내에서 농·축산업용 기자재 및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종전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수입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확보의 정책 목표에 적합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사후환급, 면제의 방법의 제도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중복성이 존재함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실제 농기자재를 수입하는 농업인이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소비세이므로 최종소비자인 농업인이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기계 등의 영세율 적용이나 사후환급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조세지출이 이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제도가 운영되어도 농기계사용자인 농민의 지속적인소득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세지출의 효과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8	기타	

21. 영농상속인의 상속세 추가공제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16억(2012년 실적)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영농상속인 경우 5억원의 한도내에서 영농 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영농분야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영농상속자가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영농상속자의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만 향후 영농법인이 대규모되면 이 한도를 더 높여줄 필요성이 존재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영농의 기본은 토지가 필요하고 상속세 납부를 통해 농토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수행에 효과적인 조세지출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2009, 정지선, 조세와 법)
8	기타	• 조세지출이 소액(100억) 기준에 미달하나 미래 영농인육성에 필수적인 제도로 판단됨

2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지출규모 : 199억원(2012년)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농민이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함)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1천200만원에 조합원 수 및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

○ 이 경우 조합원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합원이란 구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 사업과 중복가능성 높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고소득 조합원의 수혜가능성이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2012년 390억, 영농조합법인 7,640개(2011년) 출자자수 113,118(2011) 1억원 이상 출자자비중60%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분야 경쟁력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개선방안(2010) 용역보고서에 의거함. 해외사례 존재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지출규모 : 27억원 추정(2013년)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농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 소정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 사업과 중복가능성 높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출자자인 농업인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업회사법인과 농업인의 정의는 명확하나 고소득 농업인도 포함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2012년 23억, 영농조합법인 1,9260개(2011년) 출자자수 32,924(2011) 1억원 이상 출자자비중이65%이고 5억원이상 출자자도 20%에 이룸. • 사실상 지원규모가 미미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업회사법인과 농업분야 경쟁력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개선방안(2010) 용역보고서에 의거함. 해외사례 존재
8 기타	•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24. 조합원 용자서류 인지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이나 예적금에 대한 인지세는 다른 금융기관도 고객이 납부하지 않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특정 세목,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성이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용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으나 적금 등의 인지세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부담하지 않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인지세에 건수를 곱하여 조세지출을 계산하고 정책 목표에 맞는 조세지출 규모이나 용자와 저축에 대한 인지세 조세지출은 그 목적에 차이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정책목표에 충실하고 분명한 조세지출 항목이 계산되지만 개인별로 너무 소액의 조세지출항목이고 그 항목이 개인의 목적에 따라 저축 혹은 대출을 받는 상황이며 농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수행에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인지세가 주요 세목이 아니고 동 조세지출 항목도 소액이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가 없는 것은 항목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8	기타	

25. 농어촌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 조세지출규모 : 6.8억(2012년 실적)_자료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의 매매 등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됨에 따라 인지세 감면의 실질적 정책 대상이 국가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인지세 감면으로 농지관리기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손비보전 불필요하므로 적절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지매입사업의 정책 수행에 조세지출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실이 보전되는 농어촌공사라는 점에서 세금으로 직접 손실 보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촌경제연구원(2011)-농업, 농촌 여건 변화 대비 농지은행 대응방안
8	기타	

26. 농업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 근거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적용대상이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출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면 앞선 조세지출의 정책 목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인이 조세지출 대상자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조세지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업인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의 목적이 특정 조세정책의 운영보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의 목적으로 판단할 때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이에 상충되기 때문에 농특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그 규모가 추정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특세는 surtax로 정책 수행과 큰 관련성은 낮지만 그 수행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는 없으나 농특세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됨
8	기타	

27. 농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 근거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음.

— 다만, 고가주택을 제외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출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면 앞선 조세지출의 정책목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함, 본 규정은 특히 귀농과 농가주택 취득으로 인한 농업인 생활 안정을 정책 목적으로 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자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조세지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의 목적이 특정 조세정책의 운영보다 농촌 상주인구 증가 및 농촌 생활 안정 목적으로 판단할 때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이에 상충되기 때문에 농특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그 규모가 추정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세는 surtax로 성격상 정책 수행과 큰 관련성은 낮지만 그 수행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는 없으나 농특세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됨
8	기타	

28. 전통주(민속·농민주)에 대한 주세 저율과세

□ 근거규정: 주세법 제22조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전통주로서 정해진 출고 수량의 이하인 경우 주류종류별로 적용되는 세율에서 100분의 50의 감면을 해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부업으로서 전통주 제조에 대해 주세를 저율과세하나 알코올 도수를 통해 담배소비세와 같이 재화 가격 대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세의 특성상 농민의 전통주 제조에 대해 저율과세하는 당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의 특성상 전가되기 때문에 전통주 소비가 아닌 생산자의 저율과세가 적절하지는 않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이 최종 사용자가 아닌 소비세 항목임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 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의 저율과세로 전통주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그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29. 자경농민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의미함.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의 50% 경감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	• 중복사항 없음

평가항목		평가결과
	가?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을 그 대상으로 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이 실제 조세지출을 수령하나 농업의 폐업 등으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기간이 2년으로 영농의 지속성 측면에서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됨, 농업시설의 경우 농민이 실제 조세지출을 수령하나 관련 시설의 폐쇄 등으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기간이 없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농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농업을 계속적으로 향유하는 기간을 더 길게 해야 함, 농업시설의 경우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정확한 산정에 의문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의 감면율이 일반적 조세특례와 같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이 농지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의문과 짧은 취득세 재추징기간에 따라 정책 수행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30.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및 자동차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109억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의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의 정책목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기계를 취득하는 자경농민에 적용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등의 면제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구입에 제한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촌경제연구원(2005)
8	기타	• 지방세

31. 농업용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취득세 면제의 정책목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관정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에 적용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정시설 설치 목표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32. 농지(임야)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임야) 취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4년

□ 세부내용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 한정)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함.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지 및 임야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개간 농지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농업,임업용지 확보의 정책목표를 가짐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	• 중복사항 없음

	가?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간자 및 임업후계자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대상자가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이 정책 수행에 일정한 보조적인 역할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3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의 영농용 부동산 취득과 농업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지원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나 농업용 부동산과 가공용 부동산의 감면 비율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조세지출이 정책 수행에 일정한 보조적인 역할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3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지원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조세지출이 정책 수행에 일정한 보조적인 역할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35.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 2

○ 조세지출규모 : 2012년 신설

○ 일몰시한 : 2015년

□ 세부내용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다만,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 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지가액 6억원을 한도로 하여 농업인이 재산세 면제를 받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고령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나 일반 주택 담보 연금시 재산세를 25% 경감하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25조)에 비하면 농지에 과다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고령의 농민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 고령자의 인식분석(2009, 한국행정논집, 오희장, 조덕호) 등 농지연금 관련 된 선행연구가 있음
8 기타	• 지방세

36.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의미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민을 그 대상으로 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실제 농업 운영 목적으로 농업인이 수령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자경농민의 경작 비용 절감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37. 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다만,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의 50% 경감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	• 농민을 그 대상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결과
	는가?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이 실제 조세지출을 수령하나 농업의 폐업 등으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기간이 3년으로 영농의 지속성 측면에서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농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농업을 계속적으로 향유하는 기간을 더 길게 해야 함. 현재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의 감면율이 일반적 조세특례와 같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이 농지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의문과 짧은 취득세 재추징기간에 따라 정책 수행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38.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정책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촌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수령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취득가액의 입증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조세지출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39. 농림, 축산업 및 수산업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및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소득 보전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적절히 선정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대상자가 수령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곤란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소득 보전 목적의 정책 수행에 직접 효과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40. 농업소득세 면제(폐지)

41.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 제3항 및 제4항

○ 조세지출규모 : 492억(2012 농협중앙회 실적)

○ 일몰시한 : 2013년 일몰

□ 세부내용

○ 농협중앙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명칭사용료 및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봄.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협중앙회의 타발적인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통한 농업인 지원자금 일실을 방지하고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추가 조세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므로 농협이 조세지출의 대상자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협중앙회의 법인세 감소에 영향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 수령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조세지출 규모가 규정되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출이 아닌 관련 기관에 대한 조세지출의 간접지원 방법이고 법인세 추가세수를 통해서도 농민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역할의 효과성은 보통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세무자문 용역(2010, 삼일회계법인) - 민간 회계법인의 용역임
8	기타	

42. 농협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세지출규모 : 1,883억 잠정(2012년), 28억(산립조합, 2012년 실적)

○ 일몰시한 : 2014년

□ 세부내용

○ 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소정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해당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않음.

○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에 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및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인의 자조조직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있으나 농민에 대한 간접지원임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농촌 내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므로 다른 항목과 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협동조합법이 의한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그 정책 대상자이며 대상자가 분명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법인세 감면에 관한 조세지출은 직접 농협 조합이 수령하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법인세율이 2009년부터 12%에서 9%로 낮아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일반법인 적용세율은

평가항목		평가결과
		계속 낮아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조세지출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조합당 평균 법인세 수혜액이 157백만원 (1,833억원/ 1,165개 조합)이어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교육지원, 경제, 신용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농협의 당기순이익 과세에 특정된 선행연구는 없음
8	기타	

43. 명칭사용료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 제5항

○ 조세지출규모 : 447억(2012 실적)

○ 일몰시한 : 2013년 일몰

□ 세부내용

○ 구조개편 이후 실질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는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영리법인에 한함) 등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익목적의 명칭사용료 등 용역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농업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후 수익사업 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재원 총당할 때 법인세부담을 낮추는 목적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협중앙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협중앙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명칭사용료를 과다 수령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을 배제하여 고유목적사업 총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세금을 더 내서 그 재원으로 정

평가항목		평가결과
		부가 농촌 진흥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협의 고유업무 활용에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세무자문용역 (2010, 삼일회계법인)-민간 연구
8	기타	

44.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제1항 및 제3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11년 개정시 농식품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창투조합등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하였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식품 투자 진흥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이 농업과의 관련성이 이차적인 관계임.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출자한 법인들이 법인세를 면제받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조세지출 항목이어서 이에 대한 조세지출의 효과나 조세지출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움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이 제도의 도입으로 농식품 투자가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낮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8	기타	

4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조세지출규모 : 4,991억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공급이고 그 대가 또한 실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단서 등으로 제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부가가치세가 세입 후 다시 세출되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조세지출 항목 마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정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들과 항목이나 면제규모의 수준이 유사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측면의 정책 수행에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46. 농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 제6항 및 제7항

○ 조세지출규모 : 570억(2012 농협중앙회 실적)

○ 일몰시한 : 2013 일몰

□ 세부내용

○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같은법 제134조의 2부터 제134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후 수익사업 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명칭사용료와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협중앙회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협중앙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명칭사용료나 전산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세금을 더 내서 그 재원으로 정부가 농촌 진흥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협의 고유업무 활용에 필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세무자문용역(2010, 삼일회계법인)-민간 연구
8	기타	

47. 농협임직원 우선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0항

○ 조세지출규모 : 6억(2012년 실적)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는 협동조합의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배제하고 회원에 대한 우선적 배당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이는 우리사주제도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그 차이가 없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우리사주제도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협 등의 임직원(공공성이 일부 존재하는 기업이며 농민보다 더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업 향유)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임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배당소득 비과세의 대상자가 농민 조합원보다 임금 수준 등이 높은 농협임직원에 한정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근로자 우리사주조합처럼 농협의 출자금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조세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건당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출자금 확보의 목적에서 출자금액의 일정률이 아닌 비과세가 적용되는 최대금액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출자에 대한 유인이 떨어질 수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조합원(농민) 출자 활성화가 더 정책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배당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본 확충보

		다 자본 일실이 있을 수도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률/가입의 의무성에 대한 분위기/가입자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만약 자율 가입임에도 가입자가 많고 배당률이 높다면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금융상품의 하나로서 재산 증식을 위한 조세지출일 수 있음

4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조세지출규모 : 62억(2012년 잠정실적)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게는 당해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준용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지방이전기업 조세감면(조특법 제63조)과 일부 중복성이 있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대상이 명확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함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농공단지 입주기업 등)가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의 적절한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은 다른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출 수준과 동일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4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2012년 6월 기준 농공단지의 분양률 96.5%, 업체당 평균 26명의 고용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농공단지 활성화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8	기타	• 조세지출의 규모가 작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됨

49. 농식품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자료_계속)

□ 세부내용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식품 투자 진흥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식품투자조합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이 규모의 추정이 곤란함. 또한 조세지출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이 제도의 도입으로 농식품 투자가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낮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8	기타	

50. 농협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 근거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411억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협에 제공되는 각종 조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면 앞선 조세지출의 정책 목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함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조세지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산은금융지주 등에도 감면분에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 농특세법 제4조의 규정에 농협도 포함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특세는 surtax로 성격상 정책 수행과 큰 관련성은 낮지만 그 수행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는 없으나 농특세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됨
8	기타	

51. 농협 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교육세 면제

□ 근거규정 : 교육세법 제4조

○ 조세지출규모 : 132억

○ 일몰시한 : 계속

□ 세부내용

○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공익신탁 재산의 원본 보호를 위해 정책 목표 공익신탁재산에 교육세 비과세를 적용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협 등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조세지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교육세 비과세항목에 공익신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익신탁에 농협의 기금이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협 자금의 원본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세 비과세가 합당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52.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 조세지출규모 : 784억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이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음.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임차도 가능)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들이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지역 조합들의 지방세 감면은 조세감면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음. 특히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을 보유한 안정적인 조합들에게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은 농업법인 등의 비농업용(유통, 창고 등)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민 소득증대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53. 조합 합병시 법인등기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13억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세 및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각 조합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면제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적절한 대상자가 받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구조조정지원세제의 특성상 다른 구조조정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지출 규모로 판단되나 그 규모가 소액이어서 필요성에 의문이 있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로 구조조정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54.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구판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제2항(농수산물공사 - 지방공기업)

○ 조세지출규모 : 16억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3년 일몰(농수산물공사)

□ 세부내용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농수산물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해줌.

－ 또한, 그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해줌.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해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이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음.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임차도 가능)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그 유통자회사 및 지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방공기업(농수산물공사)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것과 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굳이 지방세 감면을 크게 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규모도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소득증대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55. 농협중앙회 등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47억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과세기 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이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음.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임차도 가능)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각 농업관련 조합들의 중앙회가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업 관련 기관의 조세감면을 50% 수준의 조세감면이나 그 규모가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민 소득증대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56. 농협·산림조합의 회원들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공동이용시설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지방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 조세지출규모 : 3억(2012실적)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줌.

－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이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음.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임차도 가능)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관련 각 중앙회가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에 대해서는 50%의 조세감면율을, 신용공여사업에 대하여는 25%의 조세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회의 신용공여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규모도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민 소득증대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57.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3호

○ 조세지출규모 : 187억(2012 실적)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

□ 세부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 및 장기 경작인에게 농지 소유 장려 등을 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등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취지로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줌.

－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 등에 취득세를 면제하나 수혜자가 농어촌공사사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연관성이 높지 않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 농어촌공사가 그 대상자임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 목적에 따라 조세지출의 적절성에 차이가 존재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 목적에 따라 조세지출의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그 구분 사유와 감면율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취득에 추가 조세 부담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지방세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 목적과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어려움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58. 농협 및 농어촌공사가 용자시 담보물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 조세지출규모 : 318억(2012 실적)

○ 일몰시한 : 2015년 일몰(농협), 2014년 일몰(농어촌공사)

□ 세부내용

○ 농협 및 농협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줌.

－ 다만,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함.

－ 농어업인에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음.

－ 농민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용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로 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농민의 소득 증대나 농업경쟁력 강화 목적 적합성이 낮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중앙회 및 관련 조합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대상자와 조세지출이 연관성이 낮음

평가항목		평가결과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나 각종 조합이 농어업용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의 경감률이 높은 편임, 반면 농어촌 공사(FTA 관련)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 부족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59. 농어촌공사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4호

○ 조세지출규모 : 13억(2012 농협중앙회 실적)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 및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75% 경감하나 그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어촌공사가 그 대상자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 목적에 따라 조세지출의 적절성에 차이가 존재함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 목적에 따라 조세지출의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그 구분 사유와 감면율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규모가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지 취득에 추가 조세 부담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지방세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 목적과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어려움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

60.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중업원분 50% 경감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 조세지출규모 : 16억(2012 실적)

○ 일몰시한 : 2014년 일몰

□ 세부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영업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중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줌.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조세지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가?	• 농민 등의 소득보전이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음
2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 중복사항 없음
3	조세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들이 그 대상임
4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가?	•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조세지출을 수령하고 있음
5	조세지출의 규모산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 지역 조합들의 지방세 감면은 조세감면의 악순환이 될 수 있으며 현 조세지출의 규모도 매우 소액임
6	조세지출이 정책수행에 효과적인가?	• 농민 소득증대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7	해당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 선행연구 없음
8	기타	• 지방세